

광명시 위원회 성비 균형 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 2026. 8. 14 조례 제3418호

제1조(「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2조(「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3조(「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노력해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4조(「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5조(「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의 개정)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아니하도록 노력”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6조(「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7조(「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도록 노력”을 “않도록”으로 한다.

광명시 위원회 성비 균형 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8조(「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아니하도록 노력”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9조(「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0조(「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명시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1조(「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2조(「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3조(「광명시 보육 조례」의 개정)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4조(「광명시 경관 조례」의 개정) 광명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5조(「광명시 건축 조례」의 개정)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아니하도록 노력”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16조(「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

광명시 위원회 성비 균형 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7조(「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8조(「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9조(「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